가족정책 국내동향

2023년 8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주요 현안

"근로시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저출산 韓, 노동환경 개선 시급"	[뉴스1, 심언기 기자, '23.07.16.] https://www.news1.kr/articles/5110335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에 면허정지·형사처벌 더 빨라진다"	[여성신문, 박상혁 기자, '23.07.26.]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833
"3집 중 1집은 '나혼자 산다'...1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의 2배"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23.07.27.]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7086300002
"저출산 핀셋 대책... 다태아 1명당 100만원·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	[뉴데일리, 박근빈 기자, '23.07.27.]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7/2023072700142.html
"올바른 부모역할, 가족센터와 함께 해요 » 여름방학 맞아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7.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429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한부모 가정서 일한다"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3.07.31.] https://www.yna.co.kr/view/AKR20230731036252530
"다문화 가족 자녀를 이중언어 능력자로! » 전국 가족센터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올해부터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이중언어 교실'도 운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8.0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434
"취약·위기 가족의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로 정보 연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3.08.0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438
"결혼·출산 안 하고 싶은게 아니다"...저출산 해결에 기업 역할 중요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기자, '23.08.07.] https://www.fnnews.com/news/202308071028271870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2023-07-27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되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고, 그동안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및 제27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2023-07-26	현행법에 따르면「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위의 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향후 양육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양육비 채무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가족생활·돌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2023-08-01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은 지원 방식과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2023-07-24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시 경미한 상황이거나 아동학대로 처분되지 아니하는 상황인 경우, 해당 가정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또는 재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도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16조의2 각 호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2023-07-21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방과 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부모, 돌봄 종사자 등이 협력하여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 돌봄을 수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모와 돌봄 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협동형 돌봄은 부모와 돌봄 종사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모, 돌봄 종사자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2023-07-19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미혼모·미혼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만 운영되고 있어, 위기임산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들의 영아 유기, 영아 살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한부모가족지원법」을「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위기임산부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고용지원 연계, 상담지원, 위기임산부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3-08-09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동거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성인)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가을이 사건'에서 보듯이 동거인으로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함에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지 못하고 있음. 그간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보다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확대하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2023-08-02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를 한 자에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 간주 되어 도리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2023-07-18	현행법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할 때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피해자의 주거시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와 동일)를 가해자에게 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행개선에 필요한 상담 등이 필요함에도, 이는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고, 통상 수개월이 지나 이행되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움. 이에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 또는 가해자에 관한 재신고와 재범률을 낮추고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
일가정양립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3인)	2023-07-28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 혼인건수도 2017년 26만4천건에서 2021년 19만2천건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저출생 문제는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 불평등한 성별구조,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임. 또한 사업장의 여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기간 확보와 출산 후의 신체회복에도 부족한 기간으로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명을 출산한 경우 120일,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 150일로 하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불허에 따른 제재조치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그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법으로 이관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 및 제74조의3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2023-07-26	현행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각각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가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이후에는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에 위치하는 지사・지부로 발령을 받는 등 실제로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이후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게 연고지가 없는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대한 배치도 불리한 처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그 이전의 근무지역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6항 및 제37조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2023-07-26	출산만큼이나 유・사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약 25만 5,712건에 달하는 유・사산이 발생했는데, 같은 시기 출산은 25만 7,202건으로 유・사산 건수가 출산건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출산한 여성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출산에 따른 휴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유・사산의 경우 유・사산한 여성에 대해서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 배우자에 대한 휴가규정은 없는 실정임. 유・사산 역시 출산 못지않은 심신의 회복이 필요한 바,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2023-07-17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현행법에 따른 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전보, 승진 누락, 새로운 직무배치, 낮은 성과평가 등의 조치는 사업주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인사조치와 불리한 처우 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의 판단도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의 예측가능성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불리한 처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리한 처우 해당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등).

가족관련 연구 동향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일-생활균형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결혼·가족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 글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일-생활 균형 전반을 살펴보고,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일-생활 균형은 특히 가족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표적인 가족관련 조건을 중심으로 차이와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 환경에서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다각적인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혼 상태, 자녀 유무, 가족 유형에 따른 일-생활 균형 만족 정도, 그리고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혼에 집중된 일·가족 양립에서 나아가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30, 40대 양육자, 미취학 자녀 양육자, 여성의 경우 등에게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자녀가 있는 삶의 만족에 매우 중요하다. 가족 내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양육자가 없거나 돌봄서비스 구매가 자유롭지 않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가족 내 양육자 수 등 가족의 환경과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포럼, 321호, 2023. 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56074&volume=56062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만족: 주40시간 근로제와 주52시간 근로상한제 도입의 효과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임금 근로자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기존 연구에서 제도 도입의 초기 효과에 집중하였던 데 반해, 이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 시기와 경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시간 단축제의 장·단기 효과를 정책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 40시간 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효과 검증을 위해 각각 한국노동패널 2차부터 17차 자료와 18차부터 23차 자료를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 차이 분석(heterogeneity-robust DID)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은 임금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고, 특히 주 5일제 도입과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찍 정책 대상이 된 대규모 기업 근로자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2010년대 후반의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삶과 직업 만족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직업 만족도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임금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였을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제43권 제2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979084
가족아동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본 보고서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대책 수립을 위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의 유형을 살펴보고 행복과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7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그 중 이혼과 사별로 혼자 사는 중년과 노년 남성의 행복감이 더 낮은 수준으로,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인가구 내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1인가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74호, 2023-08-07」 https://www.nafi.re.kr/_common/js/pdf/web/viewer.jsp?file=/_attach/file/2023/08//nSghelolFWqHEQYxkUOt.pdf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	한부모가족이 처한 어려움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 빈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단선적인 한계를 지님.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첩적·복합적인 빈곤의 현황과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한부모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양부모 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모든 지표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자산 빈곤의 격차가 가장 심각하였음. - 또한 이러한 수치에 대해 그 경험적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한부모 가구주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대다수였음. 특히 건강이 취약한 경우 소득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각 차원별 빈곤 경험이 강력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남.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6개 차원별 정책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각 차원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차원에 천착하는 것만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해결되기 어려움을 강조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정부의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야 하고, 한부모 가구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KWDI이슈페이퍼, 2023-08-10, 」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idx=131062
	경기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와 시사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최근 5년 내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이들의 원가정보호에 대한 원칙과 상담 및 조사, 보호배치, 보호종료 후의 사후 관리 등에 변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본 이슈분석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이슈분석, 2023-06-28,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3&boardNo=6141&board=6141&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27
	경기도 생애주기별 남성참여 가족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간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각 단계의 과업을 완수하며 발달함. 한 개인의 발달은 개인을 포함하는 일차 집단인 가족에서 이루어지며, 가족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가족 역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과업을 수행함. 남성의 가족 역할 수행, 특히 자녀 돌봄 참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한 가족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의 프로그램이 많은 경향이 있음. 남성의 가족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영유아기 때부터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나, 영유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남성의 역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여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남성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보고서, 2023-06-30, 경기도여성가족재단」 https://www.gwff.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boardNo=6150&board=615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26